

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모든 사업주

※ 지원 제외 :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(단,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시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도 제외)

○ 지원요건

1 육아휴직 등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

-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이하 '육아휴직 등')을 부여하고,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

2 대체인력 지원 요건

-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

-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

- 동 휴가·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

* 다만, 동 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(2018.7.1. 이후 동 휴가·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)

-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)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 (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)

○ 지원수준

1 간접노무비 지원

-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~40만원 지원

지원유형	지원대상	최차별 지원액 (1개월 단위)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	우선지원대상기업	월 30만원
	대규모기업	월 10만원
육아휴직	우선지원대상기업	월 30만원

※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(호 인센티브)

2 대체인력 인건비

-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
-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

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※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

○ 지급 기간 및 주기

1 간접노무비 지원

- (기간)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

- (주기)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

2 대체인력 인건비

- (기간)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(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)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
- (주기)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